

「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」 안내문

❖ 「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」이란?

시설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

- 평일 주간 : 2024년 1월 ~ 2024년 12월(12개월)
- 주말 및 공휴일, 야간 : 2024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지원대상: [돌봄직/조리직]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(단, '영유아보육법'에 따른 '어린이 집', '노인장기요양법'에 따른 '장기요양기관' 제외)

○ 지원사유: [돌봄직/조리직] 휴가, 교육, 경·조사, 병가 등 시설종사자 결원 발생 시

○ 우선순위: [돌봄직]

-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국고지원
- 생활시설, 소규모 시설(5인 이하), 지원 횟수가 적은 기관 우선 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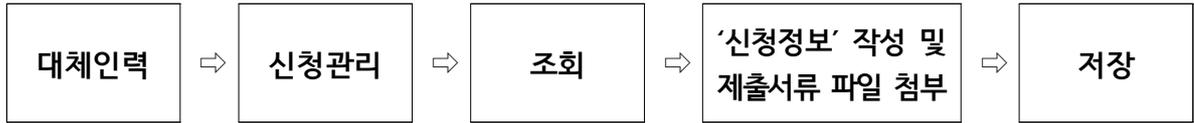
※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

○ 지원기간

- 평일 주간 : 1인 1회 연속 5일(월~금) 이내(1일 8시간 / 휴일 및 주말 지원 불가)
- 주말 및 공휴일, 야간 : 최소 4시간 ~ 1회 연속 5일 이내(휴게시간 별도)

□ 신청방법

- **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**(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)을 통한 **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**



※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,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원칙
(단, 접수 건이 없는 날은 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파견 배치될 수 있음)

- 제출서류 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하단에 첨부 후 저장)

- ◆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, 시설 이용자 사전정보 제공, 이용 서약서 등 / 홈페이지 참조
- ◆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 / 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(휴가원, 근무상황부, 진단서 등)
- ◆ 재직증명서 ※ 대체인력지원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
- ◆ 사회복지시설설치 신고(허가)증 ※ 대체인력지원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

⇒ 조리직 시범사업 신청시, '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, 시설 이용자 사전정보 제공, 이용 서약서' 만 첨부 ('이용자 사전정보 제공동의서'는 선택 사항)

- 대체인력 업무 안내서 등 신청서 다운방법

⇒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(<https://daejeon.pass.or.kr/>) → 참여마당 → 신청서식 확인

□ 대체인력 근무 안내

- 대 상: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등
- 근무장소: 파견 사회복지시설
- 지원업무: 기존 시설 종사자의 통상적인 돌봄서비스 업무 대체수행

구 분	업무내용		
돌봄직/ 장애전담	▶ 이용자 케어 ▶ 사무행정 보조	▶ 급식·간식 제공보조 ▶ 학습·프로그램 보	▶ 시설 청소지원 ▶ 여가활동 등
조리직	▶ 음식 조리업무 대체		

※ 조리직과 돌봄직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전반적인 조리업무만 가능

※ 차량운행, 단독조리업무(조리사 제외), 시설의 대청소 및 허드렛일, 단독목욕 등 제외

○ 유의사항

- ▶ 돌봄 및 조리업무가 아닌 기타 잡무(대청소, 활동보조가 아닌 단순 반복 작업 등) 지원 불가
- ▶ 차량업무 지원, 타 전문직(간호사, 재활치료사 등)의 업무지원 불가
- ▶ (돌봄직) 시설의 특성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목욕지원, 직종 외 업무수행 등 **유동적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**
 - ⇒ 반드시 **“시설종사자와 동반하여 2인 1조로 진행 시”** 지원 가능
 - ※ 대체인력 단독 업무수행 불가
 - ▶ (조리직) 식재료 및 식단표는 파견시설에서 사전에 준비
 - ▶ 설거지 및 냉장고 정리 등 뒷마무리 시, 근무시간 이후에는 추가 업무지원이 불가함
 - ⇒ 근무시간 내 업무 요청해주시고 기본적인 식사 준비 외에 추가 조리업무를 요청함으로 근무시간 내 뒷마무리를 못 할 경우 시설내 종사자분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
 - ※ (돌봄직)은 단독조리 업무 지원 불가, (조리직)은 이용인 돌봄업무 지원 불가

□ 안내사항

-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설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- 대체인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근로 행위 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,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부가적인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 종료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지원 금액 변상 및 이후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사업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센터 직원이 방문 또는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대전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(☎042-331-8980)